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을 성범죄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확대하고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애인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91호, 2020.12.29. 공포, 2021.6.30.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의 제목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관할행정기관장 및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성범죄의”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로, “성범죄 경력”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관할행정기관장”으로, “성범죄”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성범죄”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장애인복지시설을”을 “장애인관련기관을”로, “장애인복지시설에”를 “장애인관련기관에”로,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로,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임”을 “시설 또는 기관이 장애인관련기관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장애

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성범죄의”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로, “성범죄 경력”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관할행정기관장”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에게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관할행정기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관할행정기관장”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을 “관할행정기관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장으로부터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을 “장애인관련기관을”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를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관할행정기관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장으로부터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3제11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시설 또는 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의4제6항에”를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6항에 따라 신고의무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할”을 “하되, 아동학대 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함께 실시할”로 한다.

③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7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u>성범죄의 경력 조회</u>)	제36조의2(<u>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u>) ① <u>관할행정기관장 및 장애인관련기관</u> -----
① <u>시장·군수·구청장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u> 는 법 제59조의3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u>성범죄의 경력 조회</u> 를 요청하려면 <u>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u>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u>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u> ---- <u>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u> -----
1. <u>시장·군수·구청장이</u> 요청하는 경우: <u>성범죄</u>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 <u>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u> -----
2. <u>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u> 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u>장애인관련기관</u> -----

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
의 동의서

②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와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59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가. 장애인관련기관 -----

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

② 장애인관련기관을 -----
----- 장애인관련기관에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
회 회신서-----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

1.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
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하려는 시설이 장애
인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생략)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성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59조의3제1
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
영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
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
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
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36조의3(폐쇄 또는 해임의 요
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9조의3제9항 또는 제10항
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1. 장애인관련기관-----

가. ----- 시설 또는 기
관이 장애인관련기관임---

나. (현행과 같음)

2. -----

가. 장애인관련기관-----

나. (현행과 같음)

③ ----- 장애
인학대관련범죄등의 -----

----- 장애인학대관
련범죄등 경력 -----

----- 장애인관련기관의 운
영이나 장애인관련기관-----

-----.

제36조의3(폐쇄 또는 해임의 요
구) ① 관할행정기관장-----

-----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

자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또는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려면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임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받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취업자는 해임 요구 또는 해임 요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3제11항에 따라 장애인

에게 장애인관련기관-----

-----.

② 관할행정기관장-----

-----.

③ -----

--- 장애인관련기관 -----

-----.

④ 관할행정기관장-----

----- 장애인관련기관 -----
-----.

⑤ 관할행정기관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장으로부터 장애인관련기관-----

----- 장애인관

복지시설을 폐쇄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3제1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59조의4제6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련기관을 -----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

⑥ 관할행정기관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장으로부터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3제11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시설 또는 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

--.

1. ~ 4. (현행과 같음)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③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법 제59조의4제6항에 따라 신고 의무자-----

--. <후단 삭제>

③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7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 4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하되, 아동학대 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함께 실시할 ---.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3301